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인사위원회가 충분한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인사위원회 사실조사 근거 정비(안 제6조제4항)

- 인사위원회가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징계 심의·의결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나. 징계의결 요구 확인서 서식 보완(안 별지 제1호의2 서식)

- 징계의결 등 요구시 작성하는 확인서 상 징계감경 제한 비위 유형에 ‘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’ 추가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없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10. 00. ~ 11. .)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

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4항 중 “명할”을 “명하거나 징계의결 요구기관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확 인 서

1. 인적사항	소속 (현재) (협의 당시)	직위(직급) (현재) (협의 당시)	성명			
2. 비위 유형	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비위		[]해당함 []해당 없음			
	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		[]해당함 []해당 없음			
	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		[]해당함 []해당 없음			
	음주운전(음주측정 불응 포함)		[]해당함 []해당 없음			
	성폭력범죄		[]해당함 []해당 없음			
	성매매		[]해당함 []해당 없음			
	성희롱		[]해당함 []해당 없음			
	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·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		[]해당함 []해당 없음			
	「공직선거법」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비위		[]해당함 []해당 없음			
	부작위 또는 직무태만(소극행정 제외)		[]해당함 []해당 없음			
	소극행정		[]해당함 []해당 없음			
	「공무원 행동강령」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		[]해당함 []해당 없음			
	성 관련 비위나 「공무원 행동강령」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		[]해당함 []해당 없음			
	공무원 채용과 관련한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나 채용 업무와 관련한 비위 행위		[]해당함 []해당 없음			
	부정청탁이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		[]해당함 []해당 없음			
	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		[]해당함 []해당 없음			
	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		[]해당함 []해당 없음			
	3. 징계부가금	대상 여부 []해당함 []해당 없음, 대상금액(원, 배) 형사처벌 및 변상책임 이행상황 등				
4. 감경대상 공직 유무 및 감경 대상 비위 해당 여부	공직 사항		징계 사항[불문(경고) 포함]			
	포상일	포상 종류	시행청	날짜	종류	발령청
	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			[]해당함 []해당 없음		
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			[]해당함 []해당 없음			
5. 혐의자의 평소 행실	※ 주의·경고 횟수, 직무수행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.					
6. 그 밖의 사정	규제개혁이나 국정과제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비위 해당 여부 ※ 불합리한 법령정비 또는 규제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나 규제민원의 신속한 처리 등의 추진과 정에서 발생한 비위에 해당하는지 여부. 다만, 고의·중과 실이거나 금품비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외		[]해당함 []해당 없음			
	퇴직 예정일 정년: . . ., 계급정년: . . ., 근무기간 만료: . . ., 그 밖의 사항(): . . .					
	그 밖의 정상 참작 사유 기재					
위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						
년 월 일						

작성책임자 (소속 및 직위)

(직급)

(성명)

(서명 또는 인)

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
부과의결 요구권자

직인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징계등의 의결) ① ~ ③ (생 략)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 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<u>명할</u> 수 있다. ⑤ (생 략)	제6조(징계등의 의결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 <u>명하거나 징계의결 요구</u> <u>기관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</u> <u>요구할</u> ---. ⑤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	
연 락 처	(044) 205 - 3358